#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23

발의연월일: 2020. 6. 19.

발 의 자: 송옥주·권인숙·서삼석

박 정・임종성・안호영

박찬대・정춘숙・유동수

박용진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라돈물질의 배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. 현행법은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 기준을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, 건축물의 공사 후 실내공기질을 측정·관리하는 절차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.

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 공기질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,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야 하고, 사용승인 신청 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 써 건축물의 실내공기질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22조제1항·제2항, 제52조의5).

##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 중 "국토교통부령으로"를 "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(제52조의5제2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서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국토교통부령으로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"공사완료도서"를 "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, 공사완료도서"로 한다.

제5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52조의5(건축물의 실내공기질 기준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완료[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(棟)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]한 경우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야 한다.
  - ③ 실내공기질의 측정 항목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실내공기질 측정에 관한 적용례) 제22조 및 제5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건축물의 사용승인) ① 건	제22조(건축물의 사용승인) ①
축주가 제11조·제14조 또는 제	
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	
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	
공사를 완료[하나의 대지에 둘	
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	
우 동(棟)별 공사를 완료한 경	
우를 포함한다]한 후 그 건축	
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	
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	
감리완료보고서(같은 조 제1항	
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	
경우만 해당된다)와 <u>국토교통</u>	<u>실</u> 내공기질
<u>부령으로</u> 정하는 공사완료도서	측정결과서(제52조의5제2항에
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	따라 측정한 결과서를 말한다.
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.	이하 같다) 및 국토교통부령으
	<u>로</u>
	<u>.</u>
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	②
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	
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	
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	

사를 실시하고,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 를 내주어야 한다. 다만,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 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 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.

- 1. (생략)
- 2. 감리완료보고서, <u>공사완료도</u> <u>서</u>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 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

③ ~ ⑥ (생 략) <신 설>

1. (현행과 같음)
2 <u>실내공기질</u>
측정결과서, 공사완료도서
①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52조의5(건축물의 실내공기질 기준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 물의 실내공기질은 국토교통부 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 축주는 건축공사를 완료[하나 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(棟)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]한 경 우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을 측 정하여야 한다.

③ 실내공기질의 측정 항목·방 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